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2383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C과 피고는 2014. 11. 4. 원고 앞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55,000,000원을 1년에서 2년에 걸쳐 함께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55,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6. 11. 4.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백소영